

TCA TripleA (ACTP)수료시험 코칭실기 심사 규칙

제정 2021. 09. 23.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도교코칭협회(이하 "본 협회"라고 함)에서 주관하는 코칭 실기 심사가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진행되도록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 자료의 제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지원자는 아래 자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요구된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1. 녹음 파일과 녹취록
2. 코칭로그
3. 멘토코칭 로그

제3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심사위원회는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심사위원은 본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사위원회의 임무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4조(심사위원의 자격) 본 협회의 정회원 중에서 국제코칭연맹(ICF)본부의 심사관 교육을 수료한 PCC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여 한다.

제5조(심사위원의 교체) 심사를 개시한 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심사위원의 질병, 해외여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협회의 회장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심사)

- ① 지원자가 심사 자료를 제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한다.
- ② 평가는 심사위원 각자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심사위원 3인의 평균이 1차는**60점**, 2.3차는**75점**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7조(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지원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본 규칙에 정한 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정한다.